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20. 9. 15. 양형위원회

Ⅰ. 개관

1. 특징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움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 보호법익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아동·청소년 보호에 더하여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함: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 원하지 않는 촬영, 편집, 촬영물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행위,

음란행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청소년성보호법: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1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5년↑ 징역
	②	영리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소지, 운반, 광고, 소개 / 공연히 전시, 상영	5년↑ 징역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 / 광고, 소개 / 공연히 전시, 상영	3년↑ 징역
	④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 알면서 알선	3년↑ 징역
	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구입 / 소지, 시청	1년↑ 징역
	⑦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 수입, 수출	제1항의 1/2 가중

나. 성폭력처벌법

1)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4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②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③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 범죄	3년↑ 징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징역, 3천만 원↓벌금

	⑤	상습으로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형의 1/2 가중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4 조의2	①	반포등 목적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5년↓ 징역, 5천만 원↓벌금
	②	① 제1항에 따른 편집물 등을 반포등 ② 제1항의 편집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5년↓ 징역, 5천만 원↓벌금
	③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 범죄	7년↓ 징역
	④	상습으로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형의 1/2 가중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4 조의3	①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	1년↑ 징역
	②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강요	3년↑ 징역
	③	상습으로 제1항, 제2항	각 형의 1/2 가중

4)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3	성적 욕망 유발 · 만족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말 등을 도달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미수 제외 각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2, 3, 4, 5, 7항) ⇨ 포함

-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 유통되는 전형적인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법정형이나 평균 형량이 높음
- 웹하드 등을 통한 음란물·성착취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건도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 있음

▣ 미수(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 ⇨ 제외

● 살인범죄 외에 아직까지 미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다양한 미수 범죄의 행위 태양 또는 법익 침해 정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 포함

● 지난 10년간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11.3배(585건 → 6,615건) 증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2%로 증가[1)]

● 최근 강남 유명 클럽 성관계 몰래카메라 사건, 유명 앵커의 지하철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짐

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 포함

● 종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법정형이 유사하므로 그에 준하여 형량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행위 태양이 유사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음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 비록 신설되어 양형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이 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할 법관에게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안내 또는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 포함

1)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15.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범죄통계 원표를 토대로 분석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는 이미 협박 · 강요 범죄로 처벌되고 있었음. 따라서 양형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권고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에 큰 어려움이 없음
- 처벌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존재하고, 범행의 수단으로 불법 신체 촬영물 등이 사용되었다는 데 주목하여 일반적인 협박·강요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만큼, 기존의 폭력 범죄나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양형기준에 추후 추가하는 방식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통신매체이용음란 ⇨ 포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일종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
- 범죄 발생량도 상당함(양형자료조사 대상 1,891건 중 196건)

Ⅲ.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독립 범죄군 여부

▣ 일반 성범죄와 독립된 범죄군으로 설정함

●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력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등을 주로 이용하는 범행 수법 및 광범위한 피해 확산 양상 측면에서 기존의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형태·성격의 범죄임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섭할 경우,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함

3. 대유형 분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5개 대유형으로 분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과 양형인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별개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여 각각의 범행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

4. 소유형 분류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 각 항을 별개 유형으로 분류(상습범 제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각 항은 각각 행위태양과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조항별로 유형을 분류함

- 다만, 각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4항, 제14조의3 제3항)은 그 형량 가중방식(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을 반영하여, 별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둠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 하나의 구성요건이므로 별도 소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5. 최종 유형분류

·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4	아동·청소년 알선			
5	구입 등			

·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4	소지 등			

· 대유형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2	강요			

·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Ⅳ. 형량 범위 검토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 일반적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특수한 사항

-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 5(구입 등)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음: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참고할 양형 실무가 없는 상황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함

● 상습 제작 범죄에 대해서 형의 1/2을 가중하는 조항 신설됨

▣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특수한 사항

● 과거 구약식이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 징역형 선고비율과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임

● 특히 유포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법률 개정 현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2020. 5. 19. 아래와 같이 변경됨

항	구분	기존	현재
1	촬영	5년↓ 징역, 3천만 원↓벌금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2	반포 등	5년↓ 징역, 3천만 원↓벌금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3	영리 목적 반포 등	7년↓ 징역	3년↑ 징역
4	소지 등	-	3년↓ 징역, 3천만 원↓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020. 5. 19. 징역형은 2년 이하로 동일하고 벌금형만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됨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특수한 사항

● 2020. 3. 또는 2020. 5. 신설된 범죄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참고할 양형 실무가 없는 상황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 협박·강요 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함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 범위 검토

가. 소유형 1(제작 등)

1) 법정형 동일 성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 4, 5항(무기 / 5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청소년 강간·준강간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2) 선고 형량

▣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3	12	15
	%	20.0	80.0	100.0

실형		형량(월)				전체
		5	6	30	36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인원	-	-	3		3
	%	-	-	100.0		100.0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6	8	10	12	30	36	
청소년성보호	인원	-	-	-	-	-	-	10	2	12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6	8	10	12	30	36	
법 제11조 제1항	%	-	-	-	-	-	-	83.3	16.7	100.0

▣ 분석

- 평균형량 = 30.4월
-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 작량감경한 징역 2년6월(30월)에 집중
- 처벌불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 부분 고려함.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 범죄의 양형분포만으로는 기본 영역이나 가중 영역의 형량 범위까지 가늠하기는 어려움

3) 법관 대상 설문조사

감경 영역	인원	%
2년6월	**385**	**57.9**
3년	**144**	**21.7**
3년6월	**55**	**8.3**
4년	34	5.1
4년6월	6	0.9
5년	26	3.9
5년6월	2	0.3
6년 이상	13	2.0
전체	**665**	**100**

기본 영역	인원	%
2년6월	**99**	**14.8**
3년	**211**	**31.6**
3년6월	86	12.9
4년	59	8.8
4년6월	5	0.7
5년	**158**	**23.7**
6년	17	2.5
7년	19	2.8
8년	3	0.4
9년 이상	11	1.6
전체	**668**	**100**

가중 영역	인원	%
4년 이하	**94**	**14.1**
5년	**252**	**37.9**
6년	75	11.3
7년	**132**	**19.8**
8년	60	9.0
9년	20	3.0
10년 이상	32	4.8
전체	**665**	**100**

4)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유형)

▣ 감경 영역

● 제작 등 범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감경인자를 갖춘 감경 영역의 경우 하한이 법정형 하한(징역 2년 6월)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감경 영역의 상한은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과의 관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감경 영역 상한과의 균형, 규범적 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6년으로 함이 적절

▣ 기본 영역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도 기본 영역 하한이 5년인 경우가 존재함. 특히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 하한이 5년인데,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과 비교하여 성착취물제작의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가중 영역

● 감경 영역의 상한(징역 6년)과 가중 영역의 하한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역 7년이 바람직함. 엄정한 양형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가중 영역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음

●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점,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특별조정을 하면 가중 영역 상한의 1/2이 가중되는 점, 경합범일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이 가중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가중 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정함

▣ 상습범

●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상습 제작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가중된 형량 범위를 권고함이 타당

-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를 반영
- '상습'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영역 이동 방식을 취할 경우 서술식 기준과 비교하여 가중의 효과가 떨어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음

나.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1) 법정형 동일 성범죄, 성매매범죄 형량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 5항(5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유사강간 / 위계·위력유사성교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호(5년↑)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 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10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소유형 1(제작 등)과 비교하여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법률 개정 전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유형1(제작 등)보다 죄책의 정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소유형 1(제작 등)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승되었고, 아직 변경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양형기준 설정 단계에서는 규범적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양형실무의 추이를 분석하여 추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정형이 동일한 종전 성범죄/성매매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상한을 다소 높이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성매매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이 설정하여,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함

다.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 4(아동 · 청소년 알선)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 형량 범위

▣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아직 변경된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지 않음. 따라서 법정형이 동일한 종전 성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양하고,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한을 다소 높이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이 설정하여,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함

라. 소유형 5(구입 등)

1) 법정형 유사 성범죄 형량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 1-3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위계·위력 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 서술식 기준에 따라 소유형2 의제간음/강제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것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1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3.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형량 범위 검토

가. 소유형 1(제작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선고 형량

▣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242	1,316	1,558
%	15.5	84.5	100

실형	형량(개월)																				합계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인원	1	2	29	8	77	1	48	1	31	25	2	1	1	5	1	4	2	1	1	1	242
%	0.4	0.8	12.0	3.3	31.8	0.4	19.8	0.4	12.8	10.3	0.8	0.4	0.4	2.1	0.4	1.7	0.8	0.4	0.4	0.4	100

집행유예	형량(개월)										합계
	2	4	5	6	8	9	10	12	14	18	
인원	2	258	11	603	217	1	125	92	1	6	1,316
%	0.2	19.6	0.8	45.8	16.5	0.1	9.5	7.0	0.1	0.5	100

▣ 분석

- 평균형량 = 7.08개월(실형 8.66개월, 집행유예 6.79개월)
- 실형 = 6개월 31.8% > 8개월 19.8% > 10개월 12.8%
- 집행유예 = 6개월 45.8% > 4개월 19.6% > 8개월 16.5%

※ 다만,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 가능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었던 '반포 등 범죄'와 7년 이하 징역이었던 '영리 목적 반포 등 범죄'를 하나의 유형(소유형2)으로 묶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

●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소유형 1(촬영)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종전 소유형2와 유사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종전에 심의한 소유형 2(반포 등)의 권고 형량 범위를 원용할 수 있게 됨

●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보다 감경 영역의 하한과 기본 영역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소유형 2(반포 등)의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근거

● 기본 영역의 상한, 가중 영역 및 감경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소유형1과의 차등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으로, 감경 영역을 징역 4월~10월로 정함

● 기본 영역의 하한

- 유포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위하여 하한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촬영죄에 대한 하한을 징역 6월로 정하므로 그보다 죄책이 무

거운 배포죄에 대한 하한을 징역 8월로 정함

나. 소유형 2(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선고 형량

▣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6	13	19
%	31.6	68.4	100

실형	형량(개월)																				합계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인원	-	-	-	-	2	-	1	-	-	1	-	-	-	1	-	1	-	-	-	-	6
%	-	-	-	-	33.3	-	16.7	-	-	16.7	-	-	-	16.7	-	16.7	-	-	-	-	100

집행유예	형량(개월)										합계
	2	4	5	6	8	9	10	12	14	18	
인원	-	1	-	4	3	-	1	2	-	2	13
%	-	7.7	-	30.8	23.1	-	7.7	15.4	-	15.4	100

▣ 분석

- 평균 형량 = 10.32개월(실형 12.33개월, 집행유예 9.38개월)
- 5년간 총 19건, 연평균 3.8건 불과 → 표본 극소수

※ 다만,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 가능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단순 촬영행위보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므로, 비록 양자의 법정형이 같지만 죄질이 더 무거운 소유형2의 각 영역별 권고 형량 범위를 소유형1보다 다소 상향하는 것이 타당함

다.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소유형 3(배포 등)과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 태양이 유사하므로, 그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소유형 4(소지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범죄 형량 범위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3년↓, 3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형법 제271조 제1항(3년↓, 5백만 원↓)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기준	-8월	2월-1년	6월-1년6월

▣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5백만 원↓)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성매매 알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감안하여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함

마. 상습 촬영·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상습 촬영·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4.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형량 범위 검토

가. 소유형 1(편집 등) / 소유형 2(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 등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5년↓, 3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2)]**	-6.67월	5.33월-1년	8월-2년

2) 제1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0), 422면

▣ 형법 제261조 제1항(5년↓, 1천만 원↓)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 형법 제276조 제1항(5년↓, 7백만 원↓)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 · 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	-8월	6월-1년	8월-2년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소유형 1(촬영,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영역은 '8월 이하',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10월~2년 6월'로 정함

●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중 소

유형 1(편집 등)과 소유형 2(반포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소유형 1의 권고 형량 범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종전 심의 결과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촬영물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동일한 편집 등 범죄와 반포 등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반드시 달리할 필요는 없음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소유형 1(촬영)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근거

● 기본 영역의 상한과 가중 영역의 상한

- 선고형량의 분포, 유사 법정형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 6월로 정함

● 기본 영역의 하한

-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 6월이 44.8%로 가장 많은 선고가 이루어지는 형량에 해당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실무의 추세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 있음

● 감경 영역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징역 5년↓)에 대한 종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감경 영역의 상한을 징역 10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2.2% 상당이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 가중 영역의 하한

-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8월로 정하면 현행 양형실무의 약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소 많아짐

- 규범적 관점에서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10월로 정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양형을 권고

나.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소유형 2(반포 등)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그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다.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5.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형량 범위 검토

가. 소유형 1(협박)

1) 법정형 동일 협박범죄, 성범죄 형량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1년↑)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1천만 원~3천만 원)

● 성범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장애인 위계·위력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보복 목적 협박 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므로, 보복 목적 협박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게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범죄적 요소도 있으므로, 장애인 위계·위력 추행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면서 그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소유형 2(강요)

1) 법정형 동일 범죄 형량 범위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 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

●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 · 특수공갈 · 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 특수공갈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3년↑, 1천만 원~3천만 원)

● 성범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법정형이 같은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4(아동 · 청소년 알선)의 권고형량범위보다도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의 하한을 일부 상향함

다. 상습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같은 이유로 상습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6. 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양형자료조사결과

▣ 전체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8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1	5	2	49	7	97	16	11	7	1	196	5.97
	비율	0.5	2.6	1.0	25.0	3.6	49.5	8.2	5.6	3.6	0.5	100.0	

▣ 실형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8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1	3	1	7	2	16	3	5	4	1	43	6.60
	비율	2.3	7.0	2.3	16.3	4.7	37.2	7.0	11.6	9.3	2.3	100.0	

▣ 집행유예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2	1	42	5	81	13	6	3	153	5.79
	비율	1.3	0.7	27.5	3.3	52.9	8.5	3.9	2.0	100.0	

나. 형량 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가중 영역의 상한, 감경 영역의 하한

- 선고형량의 분포 등을 감안할 때,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감경 영역의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 기본 영역

- 양형자료조사 결과 6월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32.7%임

● 감경 영역의 상한

- 법정형 등 고려함. 만약 상한을 8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0.4%가 감경 영역에 포섭되는 문제 발생

● 가중 영역의 하한

-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면서도 법정형 등 감안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가중 영역 하한보다 낮게 설정함이 바람직함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강도, 약취 · 유인, 절도, 공갈, 성매매 등 다수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

● 조직적인 범행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하급심도 주된 감경사유로 참작

▣ 농아자

● 모든 범죄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행위자적 요소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다만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심신미약 상태 야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양형기준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 서술식 기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자수

● 모든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

●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면제 사유(형법 제52조 제1항)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함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횡령·배임, 증거인멸·증인은닉, 사기, 증권·금융범죄, 공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도주·범인은닉, 명예훼손 등 다수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 다만,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폭행 · 협박, 위계 · 위력, 이익 제공」도 포함

-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에서 승낙 촬영도 빈번할 수 있기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태양이라고만은 할 수 없음

- 진의에 기초한 승낙 아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익 제공이 수반된 이상 죄질이 무거움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형법 제51조 제3호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할 요소로 범행의 동기를 규정하고 있음

● 약취 · 유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체포 · 감금, 강요,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에서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체포 · 감금, 강요, 업무방해, 손괴 등에서 특별가중인자

● 성범죄는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ㅇ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특히 범행에 취약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되기 어려움
-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규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 · 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③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 · 소지 · 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횡령·배임범죄, 명예훼손범죄, 사기범죄, 지적재산권범죄, 공갈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등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성범죄, 성매매범죄에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라는 사유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 청소년 또는 위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호의 기관 ·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 감독 대상인 아동 · 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 · 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성범죄,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권리행사방해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대부분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동종의 범위

- 성범죄와 유사한 성격임

- 성매매범죄는 ① 왜곡된 성 의식의 발로이자, ②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 범죄와 동종으로 포섭 가능함

나.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ㅇ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대다수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

▣ 처벌불원

ㅇ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ㅇ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ㅇ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둠

- 사회 · 국가 법익에 대한 범죄: 종전 ① 사회 · 국가 법익에 대한 범죄 대부분과 ②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 중 19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에서 일반감경인자
- 범사회적 엄벌요청: 처벌 강화 여론에 따른 최근 법정형 대폭 상승 및 구성요건 확장 취지 존중

● 성범죄의 처벌불원 정의 규정을 차용하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정의 규정을 기재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

● 해당 및 반영 여부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기초로 판단 가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ㅇ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처벌 전력이 없어도 성범죄는 암수가 많고, 다수 범행으로 일괄 처벌할 경우 또한 존재: 이러한 경우에까지 감경인자로 기능함은 부당

● **최초로 정의 규정을 신설**

2) 일반가중인자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인자의 경우 다른 가중요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가중인자로 반영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ㅇ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성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 중 행위자/기타 인자임

● 특별가중인자로서 신고의무자 등의 범행보다는 비난가능성 낮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성범죄 등 다수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

● 동종의 범위

- 성범죄와 유사한 성격임
- 성매매범죄는 ① 왜곡된 성 의식의 발로이자, ②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이 범죄와 동종으로 포섭 가능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ㅇ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성범죄,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

●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부적절하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1) 특별감경인자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인자를 특별감경인자 취급

● 성범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경인자를 발굴함

▣ 처벌불원

> ㅇ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ㅇ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 ㅇ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처벌불원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 다만,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상당 금액 공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에서도 제외**함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 · 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거나**, ③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앞서 언급한 대유형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위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1) 특별감경인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편집, 합성, 가공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편집 등 사실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편집, 합성, 가공의 정도가 조잡한 경우와 양형상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 · 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형인자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앞서 언급한 대유형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위 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1) 특별감경인자

▣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협박범죄,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유형 범죄의 양형인자로도 반영함이 타당

2)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협박범죄,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유형 범죄의 양형인자로도 반영함이 타당

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	행위	• 소극 가담	

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앞서 언급한 대유형 범죄와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위 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ㅇ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Ⅵ. 집행유예 기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처벌불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피고인이 고령」: 일괄 제외

- 종전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함
- 그러나 「고령」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2020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음